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국세청, 2007. 4.)

<목 차>

I.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1. 도입배경
2.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II.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III.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1. 주요경비의 범위
2. 증빙서류의 종류

IV.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1. 타가사업자 및 자가사업자에 대한 적용방법
2.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방법
3. 장애인에 대한 경감율 적용방법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상한배율 적용

V.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확대
2.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및 차등 적용
3. 업종분류 개편

I.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1. 도입배경

-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

2.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의 기본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1.8배, 복식부기의무자 2.0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을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

-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신고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II.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	귀속연도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2003년 수입금액	2004년 수입금액	2005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6,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2006년 귀속) 신고시 2005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상기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 금액에 의함.

$$\text{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Ⅲ.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1.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며,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매입비용의 범위 -----

- ①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 ②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함.
- ③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 ④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 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2)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

3)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포함)로 함.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함.

2.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같음)
 - 비용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비용은 주요경비로 신고할 수 없으며,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도 일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인건비를 영수한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 날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참조

IV.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1. 타가사업자 및 자가사업자에 대한 적용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의 율을 일반율로 제정하였으며 자가사업자의 율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음.
- 단순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일반율에서 업종 구분없이 0.3%(절대치)를 차감하여 적용함.

$$\text{자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Rightarrow (\text{단순경비율} - 0.3)$$

* 크게 보아 타가와 자가의 비용차이는 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차이이며 그 비용 차이의 평균비율이 0.3%임.

- 기준경비율을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절대치)를 가산하여 적용함.

$$\text{자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Rightarrow (\text{기준경비율} + 0.4)$$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므로, 자가사업자에게는 건물 감가상각비평균비율(0.4%) 만큼을 기준경비율에 가산함.

※ 자가율 미적용 업종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산림소득,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2.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방법

- 일정규모이상(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의 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종별로 동일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음.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

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 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

(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례

업종	구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3.5%	62.9%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3.5\%)\} + \{5,000\text{천원} - (5,000\text{천원} \times 62.9\%)\} = 12,455\text{천원}$$

* 월할계산례

업종	구분	수입금액 (2006.11.2.개업)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0,000,000원	73.5%	62.9%

$$\textcircled{1} 10,000\text{천원} \times (12/2) = 60,000\text{천원}$$

$$\textcircled{2}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3.5\%)\} + \{20,000\text{천원} - (20,000\text{천원} \times 62.9\%)\} = 18,020\text{천원}$$

$$\textcircled{3} 18,020\text{천원} \times (2/12) = 3,003\text{천원}$$

3. 장애인에 대한 경감율 적용방법

○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정하여 장애인 경감율 20% 적용

$\text{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text{단순경비율} + (1 - \text{단순경비율}) \times 20\%$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rightarrow 90.3 + (100 - 90.3) \times 20\% = 92.2$$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상한배율 적용

$$\boxed{\text{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leq \boxed{\{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times \text{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8배, 2.0배)}}$$

* 소득금액 계산례

업종	수입금액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
한식음식점 (552101)	120,000,000원	72,000,000원	11.3%	88.6%	1.8배 2.0배

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주요경비의 합계액이 72,000,000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4,440,000원이 됨.

$$\begin{aligned} &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 = 120,000,000\text{원} - 72,000,000\text{원} - (120,000,000\text{원} \times 11.3\%) = 34,440,000\text{원} \end{aligned}$$

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24,624,000원, 복식부기대상자 27,360,000원)이 됨

$$\begin{aligned} &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 = [120,000,000\text{원} - (120,000,000\text{원} \times 88.6\%)] \times 1.8\text{배}(2.0\text{배}) \end{aligned}$$

⇒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②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V.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확대

○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기준경비율 대상을 확대하여 근거과세 강화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기준 >

업종구분 \ 적용대상	농·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2002~2003년 귀속	1억5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2004~2005년 귀속	9천만원	6천만원	4천8백만원

2006~2007년 귀속	7천2백만원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2008년 귀속 이후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상기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2.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및 차등 적용

- 기장유도 및 증빙수취를 통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소득상한배율을 상향 조정하되,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차등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1.8배, 복식부기의무자 2.0배

- 2007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업종분류 개편

1) 업종분류 세분화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2007년 귀속 이후)에 따라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업종 분리 신설

대분류	현 행		조 정	
	코드번호	세세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운수·통신업	630401	수로 안내(도선) 및 선박구난업	630401	선박구난업
			630403	수로 안내(도선)
사업서비스업	741400	사업경영및관리자문 중재및공공관계서비스	741400	사업경영및관리자문 중재및공공관계서비스
			741401	사업경영및관리자문 (경영지도사)
사업서비스업	742103	건축관련기술서비스 건축사	742103	건축관련기술서비스
			742105	건축사
사업서비스업	742104	토목,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및 관련서비스 기타건축및관련기술서비스	742104	토목,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및 관련서비스 기타건축및관련기술서비스
			742106	기술사
사업서비스업	742201	기술검사서비스	742201	기술검사서비스

			742202	기술지도사
--	--	--	--------	-------

※ 도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기술지도사의 업종코드 별도 부여

○ 인터넷 PC방·성인오락실 등 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업종을 세분화

대분류	현 행		개 편	
	코드번호	세세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개인서비스업	924902	전자오락실 운영 실내운전연습실 등	924902	·실내운전연습실 ·모의전투게임시설운영업 ·오락용사격장운영업
			924907	·일반게임장
			924908	·청소년게임장
			924909	·인터넷 PC방

2) 업종분류기준의 명확화

○ 예식장(웨딩홀)의 경우 부대서비스에 해당하는 음식제공부분이 포함되나 일부가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어 예식장의 적용범위에 “음식제공”을 명확히 규정

현 행			조 정
코드번호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적용범위 및 기준
930901	·예식장	○ 예식장 - 예식장 운영의 부대시설 포함 (드레스대여, 사진 등 기타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예식장 - 예식장 운영의 부대시설 포함 (드레스대여, 사진, 음식제공 등 기타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좌 동 -
	·신부드레스대여점	○ 신부드레스대여전문점	
	·예식사진촬영	○ 예식사진촬영업	
	·예식장미장원	○ 예식장미장원	

○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사설학원」을 「학원」으로 명칭 변경